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안

의 안 번 호	26-81

제출년월일 : 2026. 8. 14.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주민 행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한 다양한 주민 체감형 행복 정책 추진

나.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정책 개발, 법령 및 제도 개선 추진 등 지자체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 체계 강화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기능(제3조)

1)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행복실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행복실현 관련 대내외 홍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행복실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행복실현을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 또는 건의하는 사항

나. 임원(제5조): 공동회장 3명(상임회장 1명 포함), 부회장 10명 이내, 사무총장 1명, 감사 2명

다. 임원의 임기(제6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라. 회의 및 의결(제7조)

1) 상임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됨

2)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마. 회장단 회의(제8조): 공동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 운영

바. 고문과 자문위원(제13조)

1)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단 회의의 승인을 얻어 상임회장이 위촉

2) 고문은 행복정책에 덕망과 학식이 있는 외부인사 중에 위촉함

사. 경비부담(제17조):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

3. 규약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169조~175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회원 지방정부 현황: 17개 단체 참여(2026. 8. 4. 기준) ※ 붙임 참고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 2018. 10. 17.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하며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행복실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행복실현 관련 대내외 홍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행복실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행복실현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 또는 건의하는 사항
6. 그 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별표>의 지방자치 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②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규정과 결의사항의 준수 및 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임원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공동회장(상임회장 1인 포함) 3명
2. 부회장(권역별) 10명 이내
3. 사무총장 1명
4. 감사 2명

② 공동회장과 감사는 회원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상임회장은 공동회장 간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③ 상임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권역을 대표하는 부회장과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총장을 선임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충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상임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3장 협의회 운영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상임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상임(공동)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재적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의 제출로 출석과 의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상임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장단 회의)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장단 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공동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단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상임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의안의 제출) ① 상임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상임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임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상임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임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고문과 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단 회의의 승인을 얻어 상임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은 행복정책에 덕망과 학식이 있는 외부인사 중에 위촉한다. 단, 회원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④ 고문과 자문위원은 협의회 정기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의 설치)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통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과 주사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 및 사후 진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6조(사무국)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이에 관련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재정

제17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8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서면동의를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혹은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상임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세칙

· 2018. 10. 17. 제정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와 ’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활동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 협의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사무국) ① 협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두며, 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복실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행복실현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정책 입안
2. 공동협력사업 추진 및 협의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등
3. 협의회 개최에 따른 회의소집 통보 및 회의준비, 결과 관리
4. 협의회 운영에 따른 재무·회계 관리
5. 기타 협의회와 협의·관련된 사항

③ 사무국 위탁 및 운영경비는 회장단 회의에서 정한다.

제4조(사무국장과 직원) ①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은 임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 균등하게 파견받아 상임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는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파견받아 임명 할 수 있다.

② 파견공무원의 임금 및 제수당은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사무국장과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협의회 업무에 전담하도록 하고, 협의회 업무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2018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지방정부 현황

(※ 기준일 : 2026.08.04.)

구분	구 분		단체장	4기 임원 임기만료 (26.10.18)
	광역	지자체		
1	서울	은평구	김미경	
2		강남구	김현기	
3		성동구	유보화	상임회장
4		마포구	유동균	
5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동구	임택	부회장
6		남구	김병내	
7	전남	영암군	우승희	사무총장
8	대전	유성구	정용래	감사
9		중구	김제선	
10	경기	수원특례시	이재준	공동회장
11		안양시	최대호	
12		광명시	박승원	
13	강원	춘천시	육동한	부회장
14	충남	청양군	김홍열	
15		금산군	문정우	공동회장
16	전북	전주시	조지훈	
17	경북	의성군	최유철	
총 계 (17곳)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연회비 납부 필요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협의회 가입에 따른 연회비 등의 비용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 인구 30만 이상 회원도시의 경우 연회비 7,000천원

(단위: 천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회비	7,000	7,000	7,000	7,000	28,000

※ 규약안에 따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할 경우 2030년까지 28,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새마포담당관 새마포기획팀 채린
연 락 처	02-3153-8506